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177호 2016. 05. 27.(금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-7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————— 1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-763호

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27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소관 분장사무에 대한 회계관직 공무원을 변경
- 기타 용어순화

2. 주요 개정내용

- “총무국장” 을 “도시관리국장 “으로 변경
- “경리관 : 총무국장” 을 “재무관 : 도시관리국장” 으로 변경
- “분임경리관” 을 “분임재무관” 으로 변경
- “채무관리관” 을 “부채관리관” 으로 변경

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주차관리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560-4852) 또는 Fax(560-2791)로 알려주

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(안) 1부.

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소관 분장사무에 대한 회계관직 공무원을 변경
- 기타 용어순화

3. 주요내용

- “총무국장”을 “도시관리국장“으로 변경
- “경리관 : 총무국장”을 “재무관 : 도시관리국장”으로 변경
- “분임경리관”을 “분임재무관”으로 변경
- “채무관리관”을 “부채관리관”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
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
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해당 없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로,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재정법 제112조, 113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, 제92조”로,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”를 “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도시관리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리관 : 총무국장”을 “재무관 : 도시관리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분임경리관”을 “분임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채무관리관”을 “부채관리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기재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지방세법”을 “「지방세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예산회계법,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,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경제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경제환경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“자원순환담당”을 각각 “수도권매립지담당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<u>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) ① <u>지방재정법 제112조, 113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.</u></p> <p>1. 징 수 관 : <u>총무국장</u> 2. (생략) 3. 경 리 관 : <u>총무국장</u> 4. <u>분 입 경 리 관</u> : <u>주차관리과장</u> 5. (생략) 6. <u>채 무 관 리 관</u> : <u>주차관리과장</u> 7. ~ 9. (생략)</p> <p>② <u>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제3조(세입) ① <u>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, 세액, 소속</u></p>	<p><u>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「<u>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</u>」 - ----- -- <u>시행에</u> 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) ① 「<u>지방재정법</u>」 제91조, 92조 -----<u>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</u>을 다음 각 <u>호와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도시관리국장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재 무 관</u> : <u>도시관리국장</u> 4 <u>분 입 재 무 관</u> -----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부 채 관 리 관</u> ----- 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직무위임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</u></p> <p>제3조(세입) ① 「<u>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</u>」 (이하"조례"라 한다) 제2조</p>

별로 세입과목, 납세의무자, 납부기한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(별제 제1호서식)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(별지 제2호서식)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(별지 제3호서식)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(별지 제4호서식)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(별지 제5호서식)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략)

⑥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.

제4조(준용규정)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,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,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,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에 따른 -----

--- 그 밖에 -----

----- 따라 -----

②----- 제1항에 따라 ---

기재하여 -----

③ 제2항에 따른 -----

----- 지체 없이 -----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-----
「지방세법」-----.

제4조(준용규정) -----

----- 「지방재정법」,

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

행령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

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